

인사규정 시행 세칙

2002. 10. 1
 개정 2003. 9. 1
 개정 2009. 3. 25
 개정 2010. 9. 1
 개정 2012. 3. 1
 개정 2012. 9. 1
 개정 2014. 1. 1

1장 승진임용

1조(목적)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교원의 승진요건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 승진임용에 관하여 정관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청구자격) ①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교원이 청구할 수 있다.

1. 동일 직위에서의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시킨 교원 중에 교원 업적평가를 2회 이상 받은 교원. 단, 실처장 보직수행으로 인한 경우, 횡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

가. 삭제

나.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 현재 직위 임용기간 중 최근 6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누적평균 결과가 750점 이상인 교원

다.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 현재 직위 임용기간 중 최근 6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누적평균 결과가 800점 이상인 교원

②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대한 기여가 현저하나, 해당 교원 업적 평가 누적평균점수가 미달할 경우, 총장은 해당교원에게 승진청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승진절차) ①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한 승진임용 대상교원은 승진심사청구서(서식 1)를 교학처를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진심사 청구가 없는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

② 승진임용 대상교원이 소속한 전공의 교수는 승진임용 대상교원의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의 업적에 대한 추천서를, 실처장 보직교수 및 스쿨원장은 임용기간동안의 업적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교학처를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대상교원이 제출한 승진심사청구서와 스쿨전공교수 추천서, 실처장 및 스쿨원장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심사는 별도 지침에 의해 실시한다.
- ④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정년보장교원의 경우, 동의결과)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 중 최종 승진임용대상교원의 승진을 이사회에 제청한다.
- ⑤ 총장이 승진대상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심의결과 접수 후 7일내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7일내에 해당교원에 대한 승진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해야한다.
- ⑥ 총장은 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승진심사 청구는 대상 교원 당 연1회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달리할 수 있다.
- 제5조 (이의신청) 삭제

2장 재임용, 재계약

6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교원의 재임용, 재계약 심사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교원 재임용, 재계약 심사기준에 관하여 정관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8조(심사대상) 조교수 이상의 일반직 교수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 재계약의 심사대상이 된다. 단, 전담직 교수의 재임용은 전담직 교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심사기구) 교원 재임용, 재계약 심사기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재임용, 재계약 심사자료) 교원 재임용, 재계약 심사자료는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기타 심의자료는 상호 합의하여 임용계약서에 기록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재임용, 재계약 심사기준) ① 재임용, 재계약 기준은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평균 650점/1,000점(총장부여점수 제외) 이상으로 하며 미달될 경우 재임용,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기여가 현저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장 전담직 교수 전환

제13조(목적)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⑨에 명기된 일반직 교수의 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대상) ①전임교수 중 재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임용기간의 50%이상 남아있는 자의 재임용 심의 도래 시 실시한다.

제15조(심사기구) 전담직 교수 전환 심의기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전환 기준) ①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는 재임용자의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개인영역평가 평균 250점/400점 미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환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서면 제출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담직 교수 전환은 소속 스쿨원장평가(20%)(서식2), 실처장 보직교수 평가(10%)(서식3), 교원인사위원회 평가(10%)(서식4)와 대상자의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총점 평균(60%)을 종합하여 60점/100점 미만자로 한다(평정표 서식5).

③①과 ②항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의해 전담직 교수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자의에 의한 전담직 교수 전환 신청은 임용기간 중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의에 의해 전담직 교수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청서(서식 6)를 작성하여 교학처를 경유,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①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양과목 담당 전임교수의 경우, 개인영역평가 점수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한다.

⑤①과 ②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실처장 보직수행을 사유로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 년도의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제17조(처우) ①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기간제 교원이 전담직 교수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제 교원으로 자동 변경된다.

②전담직 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일반직 교수가 전담직 교수로 전환된 경우, 전담직 교수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직 교수로 복귀 시 승진임용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전담직 교수 임용기간은 승진임용 소요연수에 포함된다.

④전담직 교수의 처우 등은 전담직 교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8조(전담직 교수 재임용 및 일반직 교수로의 전환) ①전담직 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재계약 절차에 의해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②전담직 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전담직 교수 운영 규정에 의한다.

③전담직 교수 재임용 기준이 충족된 자를 대상으로 일반직 교수로의 전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칙

()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의 조교수 승진임용 심사 청구자격 점수는 2011년 4월 1일자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시행일) 이 규정의 재임용·재계약 심사기준은 2011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 심의부터 적용한다.

③(시행일)일반직 교수의 전담직 교수 전환 심의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임용기간이 50% 이상 남은 자의 재임용 심의 도래시 실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①항 1호의 사항은 이전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 2012.02. > 교수 승진심사 청구서

승진심사 청구서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승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어 교수승진 심사용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승진심사용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본 서류를 진실하게 작성하였음을 밝히며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1> 교육·산학·연구·봉사활동 업적 1부
- <서식2> 자기발전계획서 1부

붙 임 : 교수승진심사용서류 1부

제 출 자

쿨	
직 급	
성 명	()

원 인 사 위 원 장 귀하

· 산학 · 연구 · 봉사활동 업적

작성요령 : 이전 승진일(조교수 승진대상인 경우 최초임용일) 이후의 주요업적을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기 간 : . . . ~ . . .

1. (강의)활동 영역
2. 산학협동 영역
3. 연구 및 제안실적
4. 봉사 영역(교내·외)
5. 학교발전을 위한 업적(Only One Item 포함)
6. 리더십 영역
7. 상벌사항

작성요령 : 승진 후 교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특히, 스쿨(부서)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역(강의계획, 교수법 개선 방안 등)

2. 산학협동 영역(산학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3. Only One Item

4. 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

5. 승진 후 활동 계획

(2) 스텝원장 평가서

스텝원장 평가서
(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용)

평가대상자	소 속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평 가 항 목		의 건				
공통	교육활동영역 (강의계획 교수법 개선방안 등)					
	산학협동영역 (산학네트워크 활용방안 등)					
업적	연구 및 제안실적					
	봉사영역(교내·외)					
	학교발저늘 위한 업적					
	리더십 영역					
	상벌 사항					
계획	Only One Item					
	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					
	승진 후 활동계획					
종합의견						
종합점수 (스텝기여도)		매우 높음(20)	높음(16)	보통(12)	낮음(8)	매우 낮음(4)

※ 종합점수에 반드시 표시요망(미기재시 0점 처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_____ (인)

교원인사위원장 귀하

(3) 실·처장 보직교수 평가표

실·처장 보직교수 평가표

(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용)

피심사 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가항목	평가점수 (√ 표시)										평가의견
	10	9	8	7	6	5	4	3	2	1	
공 통	교육활동영역 (강의계획,교수법 개선방안 등)										
	산학협동영역 (산학네트워크 활용방안 등)										
업 적	연구 및 제안실적										
	봉사영역(교내·외)										
	학교발전을 위한 업적										
	리더십 영역										
	상벌 사항										
계 획	Only One Item										
	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										
	승진후 활동 계획										
점수 계										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교원인사위원장 귀하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

피심사 대상자	소 속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평가항목	평가점수 (√ 표시)										평가의견	
	10	9	8	7	6	5	4	3	2	1		
공 통	교육활동영역 (강의계획,교수법 개선방안 등)											
	산학협동영역 (산학네트워크 활용방안 등)											
업 적	연구 및 제안실적											
	봉사영역(교내·외)											
	학교발전을 위한 업적											
	리더십 영역											
	상별 사항											
계 획	Only One Item											
	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											
	승진후 활동 계획											
점수 계		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교원임용심사위원장 귀하

(6) 전담직 교수 전환 신청서

전담직 교수 전환 신청서

신 청 자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최초임용일		임용기간	
전환 신청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직 전임교수에서 전담직 전임교수로 전환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_____(인)

교원인사위원장 귀하